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일: 2026. 9.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범위) 본 내규는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본 내규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과 「대학원 내규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2장 직제

제3조(주임교수) 학과에는 「대학원 학칙」 제47조(조직)에 따라 학과 대학원 주임교수를 두며, 임기와 역할은 대학원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개별 학생의 학사지도 및 연구지도를 담당한다. 모든 학생은 입학허가를 받은 후 입학 전까지 지도교수를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도교수는 반드시 전기전자공학과 소속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제5조(학과 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학과 대학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에 따라 학과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 대학원위원회는 학과 대학원 주임교수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학과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학과 대학원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과 대학원 내규의 제·개정
2. 학생의 입학,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
3. 수업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지급, 보조에 관한 사항
5. 그 외 대학원 학사에 관한 주요 사항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학과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학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⑥ 위원장은 본조 제3항에 해당하는 안건의 의결을 학과 통합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조(학과 인사위원회) 학과 대학원 소속 교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기전자공학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3장 학위과정

제7조(과정) ① 학과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을 거치지 않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석·박사 통합과정, 이하 “통합과정”)을 둔다.

② 각 학위과정별로 별도의 세부전공은 두지 않으나, 학생설계전공의 경우 학과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생이 신청한 전공을 심의하여 승인한 내용에 따라 세부전공명, 학위명, 졸업요건 등을 정한다.

제8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대학원 학칙」 제2조의7(수업연한)과 제2조의8(재학연한)에 따른다.

제4장 입학

제9조(입학전형) 일반전형, 외국인전형,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등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입학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으며, 전형시기와 지원자격, 지원절차 등은 대학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학과에서 정할 수 있는 입학 관련 사항은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입학에 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전형방법 및 기준) 입학전형에 따라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서류심사와 구술심사 진행 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입학에 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수업

제11조(교육과정) 학과 개설교과목은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교과 개설 및 이수 요건 시행세칙」의 [별표]와 같다.

제12조(수료이수학점) ① 202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석사학위과정생 및 박사학위과정생이 수료하기 위한 최저 이수학점은 30학점, 통합과정생이 수료하기 위한 최저 이수학점은 54학점으로 한다.

② 2026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석사학위과정생 및 박사학위과정생이 수료하기 위한 최저 이수학점은 27학점, 통합과정생이 수료하기 위한 최저 이수학점은 48학점으로 한다.

③ 졸업을 위해 이수하여야 하는 최저 전공 교과목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생 및 박사학위과정생은 21학점, 통합과정생은 36학점으로 한다. 전공 교과목은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교과 개설 및 이수 요건에 대한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④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량평균은 3.0(4.3만점, B0) 이상이어야 한다.

⑤ 학위과정별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교과 이수 요건은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교과 개설 및 이수 요건에 대한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6장 장학

제13조(장학금 지급 원칙과 절차)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장학금 지급 원칙과 절차는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장학에 대한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7장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제14조(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응시절차 및 시기, 합격 기준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대한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8장 학위논문

제15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학위논문을 제출하려면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각 요건의 세부사항은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학위논문에 대한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

②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

③ 학위논문 예비심사 및 본심사 합격

④ 연구업적 요건

⑤ 교과 이수 요건

제16조(학위논문 심사)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 이후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위논문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심사를 위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학위논문에 대한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9장 수료 및 졸업

제17조(수료요건) 학위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대학원 학칙 제2조의7에 따른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정규학기) 이상 등록

②「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교과 개설 및 이수 요건 시행세칙」 제11조 제1항의 교과 수료 요건

③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

제18조(학위수여) 본 내규 제15조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충족하고, 최종 학위논문 제출 기한 내에 대학원에서 정한 방법으로 논문 제출을 완료한 경우 학위를 수여한다.

제19조(수여학위) 석사학위논문 제출자에겐 공학석사(M.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학위를 수여하며, 박사학위논문 제출자에겐 공학박사(Ph.D.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학위를 수여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